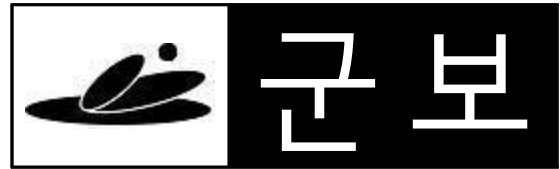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94호 2023. 4. 5.(수)

고 시

- 예산군 공고 제2023-87호 :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고시에 2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예산군 공고 제2023-88호 :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9
지형도면 정정 고시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9호 :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11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613호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입법예고

회									
람									

예산군 고시 제2023-87호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3-150호로 고시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5일

예 산 군 수

1. 예산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붙임(충고 제2023-150호)
2. 예산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2812)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유형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대로	기정	2	33,863	-	-	-	-	2	33,863	
	변경	2	33,863	-	-	-	-	2	33,863	
중로	기정	6	26,569	1	20,361	3	2,976	2	3,232	
	변경	6	26,569	1	20,361	3	2,976	2	3,232	
소로	기정	1	21,430	-	-	1	21,430	-	-	
	변경	1	21,430	-	-	1	21,430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32,265	봉산면 마교리 478-12	신양면 차동리 40-3	자동차 전용 도로	-	충남고 제 272호 ('10.08.30.)	고속도로 30호선
변경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32,265	봉산면 마교리 478-12	신양면 차동리 40-3	자동차 전용 도로	-	충남고 제 272호 ('10.08.30.)	고속도로 30호선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66m ²)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598	동측 구역계	서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제327호 ('74.09.26.)	국도45호선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598	동측 구역계	서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제327호 ('74.09.26.)	국도45호선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37m ²)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13,539	대솔면 시산리 470-2	신양면 차동리 산85-1	일반 도로		대전청고 제 187호 (‘09.02.22.)	국도32호선
						6,822	신암면 용궁리 825-15	중로1-4				
변경	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13,539	대솔면 시산리 470-2	신양면 차동리 산85-1	일반 도로		대전청고 제 187호 (‘09.02.22.)	국도32호선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268㎡)
						6,822	신암면 용궁리 825-15	중로1-4				
기정	중로	2	3	15	주간선 도로	768	대로3-2	중로2-5	일반 도로	삼교 초교	건고제327호 (‘74.09.26.)	
변경	중로	2	3	15	주간선 도로	768	대로3-2	중로2-5	일반 도로	삼교 초교	건고제327호 (‘74.09.26.)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833㎡)
기정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915	중로2-3	중로3-4	일반 도로	삼교 공원	충남고 제37 호 (‘77.02.17.)	
변경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915	중로2-3	중로3-4	일반 도로	삼교 공원	충남고 제37 호 (‘77.02.17.)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672㎡)
기정	중로	2	8	15	보조 간선 도로	1,293	소리-13	중로1-1	일반 도로	삼교역	충남고 제68 호 (‘05.04.20.)	
변경	중로	2	8	15	보조 간선 도로	1,293	소 로 1-13	중로1-1	일반 도로	삼교역	충남고 제68 호 (‘05.04.20.)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352㎡)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 도로	1,318	대로3-2	두리 865	일반 도로		충남고 제39 호 (‘87.09.10.)	
변경	중로	3	3	12	보조 간선 도로	1,318	대로3-2	두 리 865	일반 도로		충남고 제39 호 (‘87.09.10.)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1,36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1,914	소로1-3	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충남고 제68호 ('05.04.20.)	지방도619호
변경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1,914	소로1-3	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충남고 제68호 ('05.04.20.)	지방도619호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62m)
기정	소로	2	5	8~10	주간선 도로	17,926	소로2-3	예산읍 발연리 533-110	일반 도로		충남고 제272호 ('10.08.30.)	지방도618호
						3,504	소로2-7	대술면 이터리 882				
변경	소로	2	5	8~10	주간선 도로	17,926	소로2-3	예산읍 발연리 533-110	일반 도로		충남고 제272호 ('10.08.30.)	지방도618호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171m)
						3,504	소로2-7	대술면 이터리 88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	대로3-1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A=66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대로3-2	대로3-2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37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1-3	중로1-3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268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2-3	중로2-3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A=833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2-5	중로2-5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672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2-8	중로2-8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352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3-3	중로3-3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1,360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중로3-4	중로3-4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A=62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소로2-5	소로2-5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171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 과 지				
기정	3	철도	일반 철도 (정거장)	삼교읍 신가리 1-9	삼교읍 신가리 246-14	삼교역	580	70,447	충남고 제173호 ('03.11.15.)	
변경	3	철도	일반 철도 (정거장)	삼교읍 신가리 1-9	삼교읍 신가리 246-14	삼교역	580	70,447	충남고 제173호 ('03.11.15.)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59㎡)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59㎡)	·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나.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무한천	국가 하천	무한천 (지방 하천)	신암면 북측 경계	-	13.24	100~450	2,570,315	충고2010-272 (2010.08.30.)	
변경	2	무한천	국가 하천	무한천 (지방 하천)	신암면 북측 경계	-	13.24	100~450	2,570,315	충고2010-272 (2010.08.30.)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467㎡)
기정	6	성리천	지방 하천	응봉면 노화리 일원	삼교천 (국가 하천)	-	7.98	20~230	559,433	충고2010-272 (2010.08.30.)	
변경	6	성리천	지방 하천	응봉면 노화리 일원	삼교천 (국가 하천)	-	7.98	20~230	559,433	충고2010-272 (2010.08.30.)	수도공급 설비 중복 결정 (A=174㎡)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무한천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467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6	성리천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A=174m ²)	·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중복 결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1) 단위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4	정수시설 (정수장)	예산군 삼교읍 신가리 138번지 일원		증)82,343	82,343	금 회	광 역 상수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	정수시설 (정수장)	·신설 - 면적 : 82,343m ² - 용량 : 96.0천m ³ /일 - 예산군 삼교읍 신가리 138번지 일원	·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정수장의 신설

2) 간선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 장 (km)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 과 지				
신설	1	도수시설 (도수관로)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34-377번지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72-9번지		15.40	55,984.0	금 회	광 역 상수도
	2	송수시설 (송수관로)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97번지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76번지	-	0.20	817.0	금 회	광 역 상수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도수시설 (도수관로)	·신설 - 연장 : 15.40km - 면적 : 55,984.0m ²	·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도수· 송수시설(도수, 송수관로) 신설
2	송수시설 (송수관로)	·신설 - 연장 : 0.20km - 면적 : 817.0m ²	

예산군 고시 제2023-88호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83호(2023.03.30.)로 승인된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중 광장면적 변경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3. 4. 5.

예 산 군 수

1.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6	국지 도로	627	중로1-15	중로3-5	일반 도로	-	충남고 제89호 (‘78.04.12.)	경 미 한 변경
변경	소로	1	6	6	국지 도로	627	중로1-15	중로3-5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6	소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면적변경 : 감 3.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예산리 26-6번지 도로구역 제외에 따른 도로편입면적 변경 (감 3.4m²)

■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③	광장	교차점 광장	대로3-2호선과 중로3-2호선의 교차점	9,176	충남고 제197호 (‘85.12.27.)	
변경	③	광장	교차점 광장	대로3-2호선과 중로3-2호선의 교차점	8,806		경미한 변경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광장명	변경후 광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산읍 광장 3호	예산읍 광장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면적변경 : 감 37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역(국도)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감 370m²)

2.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축척 1/1,200)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3-89호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 예산군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예산군수

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충청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 2) 지정대상 : 옥외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	적 용 범 위
공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른 옥외체육시설
광고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3) 지정위치 : 충청남도 전역 (8,693km²)

구분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km ²)	비율(%)
소 계		8,693	100
제 1 종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2,116.4	24.3
제 2 종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6,310.2	72.6
제 3 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2.7	1.5
제 4 종	상업지역, 공업지역	134.2	1.5

4)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구분	측정 항목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¹⁾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lx (lm/m ²)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²⁾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광고조명		24:00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²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5) 지정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종~제4종으로 구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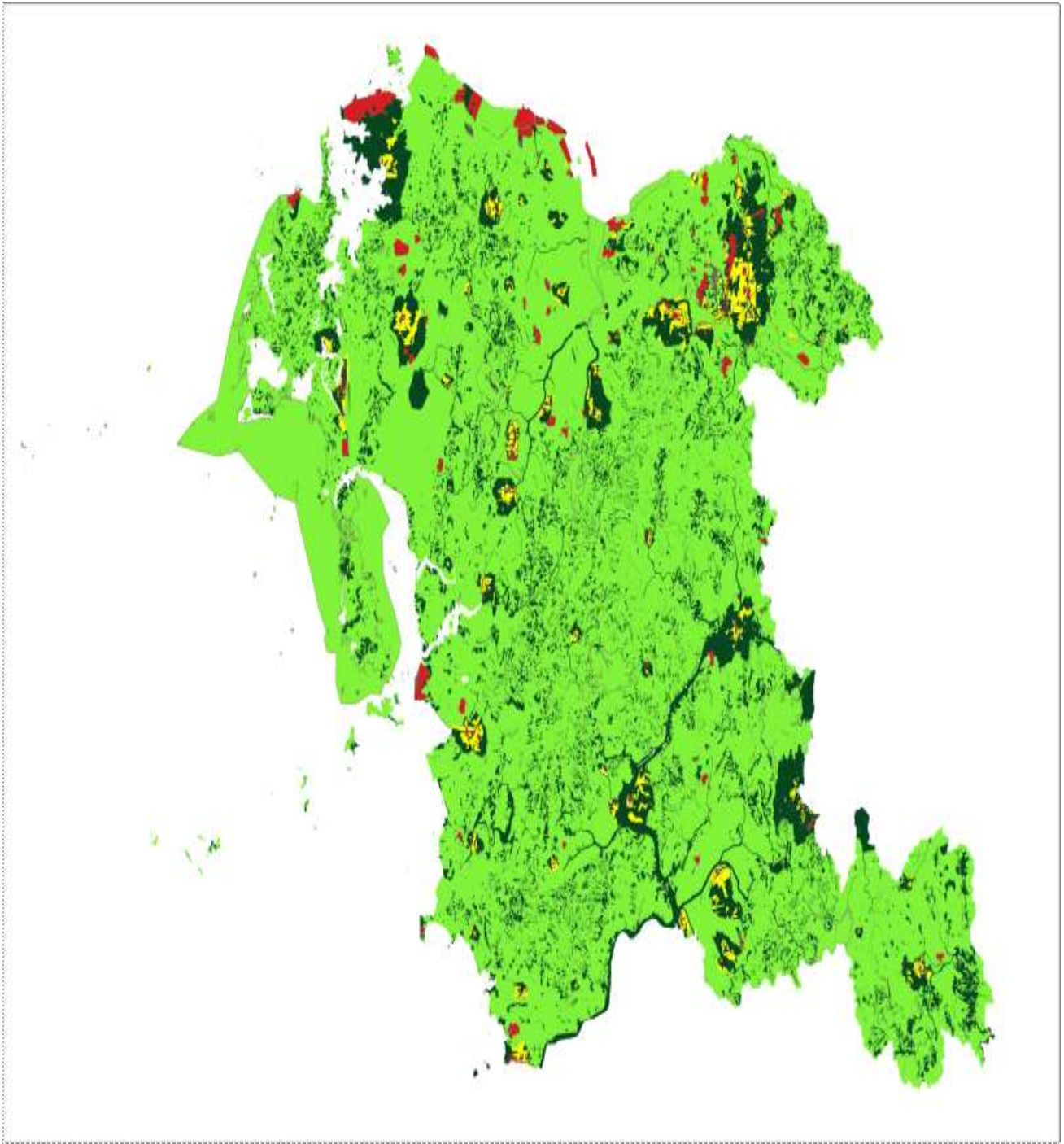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대상 구역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 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활동 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1) 조도(lm/m²) : 빛이 비추지는 곳의 밝기를 말하며, 단위면적당 빛이 들어오는 양을 의미함[단위 : 룩스(lx)] 주거지 연직면 조도 : 주거지의 벽면이나 창문면에 비추지는 빛의 단위면적당 양을 말함

2) 휘도(cd/m²) : 빛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을 때 그 곳의 밝기를 말하며, 빛이 특정방향의 입체각을 통과하는 단위면적당 광도를 의미함[단위 : 칸델라(cd/m²)]

예시) 내부에 전등이 설치되어 패널을 거쳐 빛이 나오는 광고판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광고판 패널의 밝기를 말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면



1종 (보전녹지, 자연녹지)	2종 (생산녹지, 농림, 관리)	3종 (주거지역)	4종 (공업지역, 상업지역)
-----------------------	-------------------------	--------------	-----------------------

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 ① 충청남도 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 전체 초과율 45.3%
 - 1차 평가 결과(41.9%)보다 3.4% 높으며, 전국 1차 평가결과(45.2%)와 유사함
《 시군별 표준지 측정 결과 》

구분	초과개수	측정개수	초과율
충청남도(종합)	910	2,009	45.3%
천안시	124	257	48.2%
공주시	153	222	68.9%
보령시	50	111	45.0%
아산시	100	252	39.7%
서산시	58	164	35.4%
논산시	58	117	49.6%
계룡시	46	116	39.7%
당진시	50	117	42.7%
금산군	31	75	41.3%
부여군	33	93	35.5%
서천군	31	71	43.7%
청양군	25	83	30.1%
홍성군	64	154	41.6%
예산군	42	82	51.2%
태안군	45	95	47.4%

- ② 충청남도 야간 빛환경 평가 결과

용도지역 (예정지역)	평가 결과
1종 (자연녹지지역)	. 초과율 높음(86.3%) - 빛방사허용기준 강화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조명 설치된 경우 대다수 기준 초과
2종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 등)	. 초과율 높음(74.6%) - 해안가 주변 지역은 대부분 2종 예정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조명 관리 필요
3종 (주거지역)	. 공업지역 초과율 낮음
4종 (상업 및 공업지역)	. 빛공해 발생을 높은 3·4종 지역 비율 매우 낮음 - 면적은 충남 전체의 3%이나 초과율은 40.7%로, 타지자체에 비해 빛공해 중점 관리 용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 7.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4. 3. ~ 2023. 4. 17.(14일간)

다. 제출장소

- 예산군 환경과(☎041-339-7506 / FAX 041-339-7509)

예산군 공고 제2023-613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외국인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인구증가 시책 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인구증가 시책 지원 내용 신설(안 제3조제1항)

-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안 제3조제1항제13호)
- 국적취득자 지원금(안 제3조제1항제14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5호)

○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안 제3조제2항 별표1)

- 전입실비 등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또는 2명 이상 편입한 경우 ⇒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변경 외국인

. 지원내용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 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중 선택, 태극기 1세트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 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태극기 1세트(세대당)

-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변경: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 지원대상 : 군 소재 대학교 재학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 지원대상 : 만 30세 이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 대학생

-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① 전.월세 보증금 ⇒ 삭제

②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지원) ⇒ 2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18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만 40세이하) ⇒ 신혼부부(45세이하)

○ 예외지원 기준 조문 재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2)

: 예외지원 기준 조문을 재정비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변경)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 ~ 4. 19.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9,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 전자메일 : lee6889@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9, fax : (041)339-7209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학생"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14. 국적취득자 지원금
15.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혼인으로"를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 	보건소 (읍·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등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1일 5,000원/최대 20일)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소 (읍·면)
출산축하 기념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상당)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등 	보건소 (읍·면)
난임부부 시술비용	부부가 모두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로 지급 ※ 다만,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기준 적용 	보건소 (읍·면)
전입 실비 등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다자녀가 구 대학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다만, 원격대학(사이버 대학)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시: 100만원 • 입학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 단 최초입학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 지급은 당초 “입학시”지급선정자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	총무과 (읍·면)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결혼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모두 전입시: 10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100만원 	총무과 (읍·면)
다자녀가 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주택 소유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총무과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45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주택 소유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총무과 (읍·면)
	<p>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p> <p>※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연 임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졸업 : 5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 	
청년 전입근로 자 정착지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이 없고,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외국인 포함)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자녀·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 전입근로수당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 1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만원 추가 지원 	경제과 (읍·면)
국적 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50만원 지급 	총무과 (읍·면)
전입 학생 기숙사 비 지원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총무과 (읍·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전입 <u>대학생</u> 생활용품비</p> <p>5. ~ 1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13. 14.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학생</u> -----</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u>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u></p> <p>14. <u>국적취득자 지원금</u></p> <p>15. <u>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u></p> <p>16. 17.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p>

②·③ (생략)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출산 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 	보건소 (읍·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소 (읍·면)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출산 육아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 축하 기념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상당)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등 	보건소 (읍면)
전입 실비 등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중 선택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총무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 축하 기념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 실비 등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최초 1회만 지급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하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시: 100만원 •입학 후 1년 경과 시 : 100만원 (단 최초입학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 지급은 당초 “입학시” 지급선정자에 한하여 조건 유지시 지급) 	총무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 아 이상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다만,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기업체 및 공공 기관 임직원 생활 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u> 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총무과 (읍·면)
결혼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모두 전입 시: 100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100만원 	총무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기업체 및 공공 기관 임직원 생활 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현행과 같음) ※ <u>최초 1회만 지급</u>	(현행과 같음)
결혼 축하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본분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보증금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전세 보증금 : 최대 1억원 이내 - 월세 보증금 :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총무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삭제)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u>부부 및 자녀</u>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u>다자녀</u>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만 40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 도: 전 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 위 소 득 80% 이하 가구(1 주택 소유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총무 과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연 임 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2년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졸업 : 5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 	총무 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 (45세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현행과 같음)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 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청년 전입 근로자 정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고,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 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외국인 포함)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자녀·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 전입근로수당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 : 1가 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만원 추가 지원 	경제과 (읍·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국적 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1인 50만원 지급	총무과 (읍·면)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사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총무과 (읍·면)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u>혼인으로</u>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u>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u>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참고】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예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8.5.>

3.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4. 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7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2.8.5.>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5.>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